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096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의료기관 등의 폐업 후 마약류 관리 강화	3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9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2.

(3) 회 부 일 : 2025. 2.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

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
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
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
히 폐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의료기관 등의 폐업 후 마약류 관리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의 폐업 후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고 그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안 제13조제1항),
 -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 등이 취급하던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조제2항제5호),
 -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 폐업 신고가 간주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 진료업의 휴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휴업등의 신고가 간주되도록 하며(안 제8조제2항).
 -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

-----휴업등-----

2. -----

-----휴업등-----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휴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⑥ -----

-----제4항-----

-----.

⑦ -----제6항-----

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명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 ⑦ (생략)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

-----.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제11조(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3조제3항-----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 그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양도-----

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생 략)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생 략)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으로 본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8조제6항-----

2.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서 준

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8. ~ 16. (생략) ②·③ (생략)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 20.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10. (생략) ② (생략)	<u>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7.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서 <u>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8. ~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 ----- -----. 1. 제8조제2항·제4항----- ----- 2.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서 <u>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3. ~ 20.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 -----. 1. 제8조제2항 및 제4항----- ----- 2.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제2항)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 그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제13조제1항),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취급하던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게 함(제4조제2항제2호).
- 현행법 제13조는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반드시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해당 마약류를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격 상실자의 재고 마약류 처리 방식을 다변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3조제1항은 자격 상실자의 경우에도 마약류의 폐기·양도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재고 마약류의 관리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됨.
- 한편, 안 제13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제11조제1항²⁾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

취급보고 시에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게 하려는 것임.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안 제13조제2항과 같이 준용 규정을 두기보다는 제13조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벌칙도 이에 맞게 따로 두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i) 제11조제1항의 취급 보고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마약류의 범위와 달리 대마가 빠져 있고, ii) 안 제63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64조제2호는 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의무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은 보고 절차를 준용하는 것에 불과함.

□ (**안 제8조제2항**)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와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 폐업 신고가 의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휴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휴업등의 신고가 의제되도록 함.

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승인번호 및 허가·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8조제2항³⁾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업무를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이하 “폐업등”이라 함)에는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i)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와 ii)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

□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업무를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이하 “휴업등”이라 함)에는 여전히 휴업등의 신고가 간주되도록 하면서도,

이들이 개별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폐업신고가 간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약국의 폐업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재고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허가를 받거나 폐업등을 신고하고 있고,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고 폐업등을 신고하고 있는데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4)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현행법상 별도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⁵⁾, 각 개별법과 별개로 현행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게 할 경우 동일한 신고 행위를 반복하게 하여 중복 규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휴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도 휴업등의 신고가 간주되도록 하고 있는데, 동물병원 개설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되며 개별법에 따라 휴업등의 신고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안 제8조제3항 신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이나 처분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⁶⁾, 개정안과 같이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 현재 동물병원의 폐업신고 시에는 「수의사법 시행규칙⁷⁾」에 따라 동물병원 폐업신고서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현황(품명, 수량, 처분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6)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약국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7)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휴업, 폐업) 신고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동물병원 []휴업 []폐업 신고서

※ []에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소		
폐업일	년 월 일		
동물병원 개설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사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현황 (폐업 시)	품명	수량	처분 계획

「수의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받은 자임을 고려할 때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마약류 취급 권한이 없으므로 주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 ① 제6조제1항·제2항이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 명부(名簿)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등의 폐업 시 마약류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업 후 남겨진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의료기관 등이 개별 법률에 따른 폐업 신고에 병행하여 현행법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폐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 정책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⁹⁾.

□ (법제처) 안 제13조제2항에서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 절차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판단되나, 법제적 측면에서 준용 규정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제11조제1항의 취급 보고 대상에서 대마가 빠져 있다는 점,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취급의 범위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범위보다 더 넓다는 점, ③ 개정안은 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제2항은 보고 절차를 준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고의무는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준용 규정보다는 별도의 보고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벌칙도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보임.

9) 현행과 같이 폐업신고 의제조항을 유지하면서 폐업 신고 시 보유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약사법」,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한의사협회) 개정안은 폐업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추가로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 규제임.

□ (대한약사회) 개정안 제13조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도" 뿐만 아니라 "폐기"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에 찬성함. 다만,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중복신고 폐지의 방식이 아닌 보건소에서 폐업업체에 대한 재고 마약류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04